

I . 전무출신 규정의 연원

목 차

1. 불법연구회 규약 (원기 12년) 4면
2. 불법연구회 규약 (원기 19년) 5면
3. 불법연구회 회규 (원기 26년 ~ 33년) 5면
4. 원불교 내규 (원기 34년) 9면

전문출신 규정의 연원

1. 불법연구회 규약 (원기 12년)

出家工夫人의 責任

1. 공부할때에 비용금이 염녀 업난 사람은 매년 동하 6개월은 선원에 와서 각 항공부 진행 하기를 주의 할일.
2. 춘추 6개월은 會中사업도 大綱安保하며 사가도 대강안보하며 한가한때가 있고 보면 강산을 구경해야 정신을 소창하며 모든 교회선지식으로 조차 의견 교환하기를 주의 할일.
3. 공부할때에 비용금이 없는 사람들은 춘추 6개월에 비용금을 장만하여 가지고 동하 육개월은 선원에 와서 각항공부 진행 하기를 주의 할일.
단, 회중에서 난 비용금이 無한 공부인의 정도를 보와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모든 일에 표준이 될만한 사람이 있고 보면 회중공의를 얻어 공부하난대 곤란함이 없게하여 주기로 함.

동하 6개월에 매일공부하난 순서

1. 주야이십사시내에 8시간은 잠자고 8시간은 공부하고 8시간은 육신을 운동해야 정신도 소창하며 모든 동료와 더불어 각항의견을 교환하기로 함.
2. 오전 2시간은 좌선하고 또는 2시간은 취지규약경전을 연습하고 오후 2시간은 일기를 하되 시간을 대조하여 기재하며 응용하는대 각항처리건을 기재하며 어떠한 감각이 있고 보면 감각된 사유를 기재하며 또 2시간은 문목의두를 강연하기로 함.
단, 처음에는 시간을 정하고 과정을 정하였으나 공부하는 정도를 따라서 시간과 과정을 차차 없애고 무시간단으로 수양하던 방법과 연구하기를 주장함.

2. 불법연구회 규약 (원기 19년)

제3장 출 가

제15조 출가의 규정은 아래와 如함.

1. 출가원서

2. 원서제출시 手續

제16조 회원이 본가를 떠나 출가할 지원이 있을때는 교정원에 원서를 제출함.

제17조 출가원서를 제출할때는 소관교무의 신분보증서 1통과 당인의 생활계획서 1통과 당인의 관계입허가증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함.

단, 교정원에서는 위의 서류를 조사하여 만일 1건이라도 부족함이 있고 보면 지원서를 반송함.

3. 불법연구회 회규 (원기 26년 ~ 33년)

제2절 출 가 회 원

제1항 총 칙

제128조 출가회원을 전무출신자라 칭함.

제129조 전무출신자는 정신 육신 양방면으로 오로지 본회를 창립키 위하여 출가한 자로 함.

제130조 전무출신자를 아래의 4기로 分하여 등록함.

1. 정식 전무출신자 : 전무출신예비급 훈련기를 경과하여 전무출신 정식부에 등록된 자.

단, 본회 공부사업에 대한 실력을 참작하여 회무총장의 인증이 有한 자는 예비급 훈련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식부에 등록함을 득함.

2. 훈련 전무출신자 : 전무출신의 허가를 처하여 전무출신 훈련부에 등록된 자.

3. 예비 전무출신자 : 전무출신 서원서를 제출하여 전무출신 예비부에 등록된 자.

4. 기성 전무출신자 : 장래 전무출신하기를 예약한 자로 전무출신 기성부에 등록된 자.

제131조 강원수학 또는 실무훈련을 종료하고 정식 전무출신부에 등록할 時는 證師及 大衆 列席下에 식을 거행함.

제132조 수학 또는 실무훈련기한은 3개년으로 함.

단, 본인의 실력에 의하여 회무총장이 이를 신축함을 득함.

제133조 훈련부자는 본회에 대한 각종지식을 훈련케 함.

제134조 훈련부 재적중에 열반할 시라도 그 신용이 여일한 자는 훈련부 등록 일부터 정식부자로 취급함.

제135조 예비부자는 본회에 대한 기초지식을 수학케 함.

제136조 예비부 재적중에 열반한 時라도 신성 또는 실력이 특수한 자는 사후에 정식부로 추인함.

제137조 기성전무출신의 예약연한은 1년이상 10년이하로 함.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내 출가의 형편이 불능할 時는 회무총장의 인증을 득하여 연기함을 득함.

제138조 정식부 전무출신자는 그 의무 이행성적의 우열을 따라 1종으로 부터 5종까지 등급을 취함.

제139조 전무출신자의 다년 경험을 보아서 아래 5항이 충실하여 소호도 흠이 無한 자는 1종이요, 다음은 그 우열을 따라 2종 3종 4종 5종으로 정함.

단, 5종에도 불급한 자는 비록 현임직무가 有할지라도 종별로 취급함.

1. 사가의 구속이 없이 그 임무를 전일 이행하는 자.
2. 임무이행의 취지가 급료를 받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의무감으로 써 이행한 자.
3. 본회명령에는 호오를 불택하여 항시 그 지정 임무에 노력하는

자.

4. 정신과 힘을 다하여 본회 외에는 달리 마음이 흐르지 아니한 자.
5. 공부사업 양방면으로 공덕이 항시 늘어나는 자.

제140조 전무출신자로서 공중의 인증이 有한 자는 공무에 큰지장이 無한 정도로 사가사를 조력함을 득함.

제141조 전무출신 도중에 사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가의 인증을 受할 지장이 생할 時는 일정한 기한 사가사를 정리한 후 편히 전무출신을 계속함을 득함.

제 2항 수 속

제142조 전무출신을 원하는 자는 총무부에 아래 기록된 서류를 제출함을 要함.

1. 전무출신 서원서
2. 출가 동기서
3. 관계자의 출가승낙서
4. 출신지방 관할 교무의 의견서
5. 의사의 건강증명서
6. 호적등본
7. 이력서 및 사진

단, 의사의 건강증명서는 회무총장의 인증이 有한 時는 생략함을 득함.

제143조 전무출신은 원의를 경해야 회무총장이 이를 결정함.

제144조 아래 기록된 각항의 1에 해당한 자는 전무출신으로 처리함을 부득함.

1. 국민학교이상의 졸업증이 無한 자 또는 同정도 이상의 학력이 無한 자.
2. 국민학교이상 학력이 無한 자로 한문의 문리를 통하지 못한 자.
3. 전염악질이 無한 자.
4. 세상에 드러난 악행이 有한 자.

5. 연령이 만 15세 미만된 자 또는 60세 이상된 자.

단, 기록된 항목에 해당한 자라도 종법사의 인증이 有한 자는 此限에 不在함.

제3항 대 우

제145조 본회는 전무출신자의 공로의 등급을 따라 노쇠시의 봉공과 사후에 제사를 담당함.

제146조 본회는 전무출신자중 생자녀가 無한자 또는 독신자에게 법자녀를 정하여 주고 교육비를 부담함.

제147조 대각여래위인의 부모는 대회사, 출가위인의 부모는 중회사, 법강항마위인의 부모는 소회사로써 대우함.

제148조 전무출신자로 3등시상의 사업성적과 정식 법마상전급의 법계와 15년 이상 전무출신의 성적이 유한 자는 비록 법강항마위에 승급을 못한자라도 그 부모를 소회사로써 대우함.

단, 창립기한중에 한하여 정식 전무출신자의 부모를 회사로써 대우함.

제149조 전무출신의 상조기관을 置하여 친목을 도모함.

제4항 전무출신 권장자

제150조 전무출신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사가사를 담당한자를 전무출신 권장자로 대우해야 그 공로를 표창함.

제151조 전무출신 권장자는 전무출신자의 희망에 의하여 정함.

제152조 전무출신 권장자를 3종으로 구별하여 제139조의 항목을 완전 실행케 한 자는 1종이요, 혹 소소한 구애는 있을지라도 큰 구애는 주지 않는 자는 2종이요, 크게 구애될 일만 보아주는 자는 3종으로 함.

제153조 전무출신자가 전무출신을 해제할 時는 권장자도 당일부터 같이 제명함.

제154조 전무출신 권장자중 10년이상 1종 또는 2종의 인증을 받은 자는 사후

에 전무출신으로 대우함.

제5항 除 名

제155조 아래 기록된 각항의 1에 해당한 자는 전무출신 명부에서 삭제함.

1. 사망자
2. 3년이상 행방이 불명한 자
3. 본인의 원에 의한 자
4. 회원 징계 규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

4. 원불교 내규 (원기 34년)

제5장 전무출신 규정

제1절 총 칙

제 1조 전무출신규정은 교헌 제16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구족계 30계를 수지한다.

제 3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직무외에는 다른 직무를 겸대하지 못한다.

단, 본교발전상 관련있는 직무로서 입법위원회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제 4조 전무출신은 본교의 사업외에는 다른 사업을 병영하지 못한다.

제 5조 전무출신자의 활동중 소득은 전부 본교의 수입으로 한다.

제2절 서 원

제 6조 전무출신을 서원할 때에는 사가의 구속과 외경의 장애됨을 미리 청산
하고 자유로운 심신 얻은 후에 한다.

제 7조 전무출신 서원에 대한 문예는 아래와 같다.

전무출신서원서

본인이 사중보은의 근본의무를 깊이 느끼옵고 본교의 공부와 사업에 전무하기 위하여 아래의 각항으로써 진실 서원함.

1. 마음은 사문에 드리고 몸은 공중에 바쳐서 세세생생에 이 법륜을 떠나지 않기로 함.
2. 본교의 지정한 명령에는 수화라도 불피하고 복종하기로 함.
3.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일체 포기하고 오직 본교를 위하여 정진하기로 함.
4. 전무출신에 관한 규정을 일일준수하기로 함.

위와 여히 서원하오니 복유 범신불계옵서 통촉하시옵고 제불제현께 옵서 증명하시와 본인의 이 서원 실행에 위력과 교훈을 주시오며 혹 이 서원에 위반되는 행동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징벌이라도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은 오직 참회와 실천이 있을 뿐이요 다른 여한이 없겠음을 이에 맹서함.

시 칙 년 월 일

주소

서원인

주소

보증인

원불교 감찰원 귀증

제 8조 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전무출신 동기설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추 천

제 9조 전무출신을 추천하는 자는 지원인의 신성과 신분을 충분히 고찰한 후 행한다.

제10조 전무출신 추천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전무출신 추천서

본인의 관할지방(교무가 아닐 때는 모 주소운) 모 성명이 그자격이
본교의 전무출신에 적당하겠삽기로 자이 추천함.

시창 년 월 일

주소

추천인

원불교감찰원 귀중

제11조 전무출신을 추천할 때에는 지원인의 1년이상 예회성근표와 2회이상 수
선 혹은 수강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원에 3년이상 수학증이 있으면 이상2건은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전무출신을 추천한 자는 지원인의 장래에 대한 보증의 책임이 있다.

제4절 성 적

제13조 전무출신의 성적은 당인의 자격과 년중활동여하를 고사하여 특급으로
부터 5급까지의 등별을 두고 상당한 연봉을 계산하여 당인의 용금을
제하고는 전부 성적에 편입한다.

제14조 용금지불은 1종은 2할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2종은 9할이상을 초과
하지 않기로 한다.

제15조 지불금액이 소정계한에 초과된 때에는 그 초과금을 위신금으로하여 배
액계산으로써 성적에서 삭제하되 삭제할 때 성적 없을 때에는 손실금
으로 기재한다.

단, 시국관계와 특별사정으로 입법위원회의 인증이 있을 때에는 倍額
삭제를 하지 않는다.

제16조 전무출신자로서 교증公費로 낸한修學을 할 때에는 그 비용을 교증에
부채로 하였다가 졸업執務時에 그 성적에서 보상한다.

단, 공비로 修學한 자로서 졸업후 전무출신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학비금을 返償한다.

제17조 수양 또는 치료시 지불된 금액도 당인의 성적에서 除上한다.

단, 직접직무는 아니할지라도 어느 방면으로든지 교무에相當한 도움이 있는 자는 이를 제상하지 않는다.

제18조 성적결산은 공부사업을 합한 총점수로써 그 순서를 정하되 특등은 240 점, 1등은 180점, 2등은 150점, 3등은 120점, 4등은 90점, 5등은 60점以上으로 한다.

(거진출신도 此에 同例로 한다)

제5절 사가의 관계

제19조 전무출신자는 가족내 직접관계인의 전무출신 승락과 家族後事를 담당하겠다는 약속을 얻은 후 실행한다.

제20조 관계인의 전무출신승락에 대한 文例는 다음과 같다.

전무출신승락서

본인의 ○○(관계) 모 성명이 사가를 不顧하고 귀교에 전무출신하여도 異議가 없사오며 사가생활은 본인이 전부 담당대행 하겠삽기로 차이승락함.

시창 년 월 일

주소

승락인

원불교감찰원 귀증

제21조 본교에서는 전무출신 권장자를 거진출진溥에 등록하고 所當전무출신의 성적에 따라 시상 한다.

제22조 전무출신의 가족이 아닐지라도 전무출신 권장의 의지로 가사를 전담해 주는 자는 거진출진에 등록할 수 있다.

제23조 전무출신으로서 가족사에 끌린바가 되어 원직무에 손실이 생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급별을 저하하며 萬苦過度할 때에는 그 職務를 회수한다.

제24조 전무출신으로서 가족을 任地附近에 이주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인증을 얻어야 한다.
단, 已往居住者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이종 전무출신자는 등별에 의하여 아래의 편법을 쓴다.

1. 지방에 단독교감 또는 교무로 임명될 때에는 立法委員會에 등록을 얻어 가족을 대동하고 부임할 수 있다(단, 單一世帶에 限한다.)
2. 가족을 대동한 자는 지정한 급료를 수령하는 동시에 지방교도의 요구에 의하여 생활하고 별도 다른 직업 경영하지 못한다.
3. 대동가족으로서 교화사업에 보조의 역할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보수 혹은 시상한다.

제26조 본교에서는 전무출신의 후원회를 組織하고 자녀교육과 기타 特別한 난경에 精神 혹은 수의원조하기로 한다.

단, 전무출신 후원회에 관한 세칙은 별로 정한다.

제27조 전무출신으로서 사가생활에 혹은 부득이한 형편이 있을 때에는 입법위원회의 등록을 얻어 전무출신을 中止할 수 있으되 在勤中 다른 過誤가 없고 또는 그進退가 정당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인의 소유성적은 如前認證하여 그 中止의 事由欄에 「정식인증」이라 記入한다.

제28조 정식인증을 얻어 전무출신을 중지한 자로서 가사를 정리하고 다시 복무할 때에는 절차를 再要하지 아니하며 前집무시일을 계속하여 성적을 계산한다.

제6절 대 우

제29조 전무출신으로서 年龄 滿65歲가 되면 수양원에서 정양하기로 한다.

단, 공사간 특별전정이 있는 때에는 이 年限에 拘束되지 않는다.

제30조 수양원은 甲乙丙 3종을 두고 전무출신의 성적에 따라 이용케 하되 특

등, 1등은 甲종수양원, 2등,3등은 乙종수양원, 4등,5등은 丙종수양원으로 한다.

단, 초창기에 있어서는 合同修養할 수도 있다.

제31조 1기전무출신과 2종전무출신은 열반후 入廟는 같이하되 修養時 修養費는 教中에서 담당하지 아니한다.

단, 사가에 의탁이 없을 때에는 특별 고려할 수 있다.

제32조 전무출신의 喪葬과 服制는 성적에 따라 특등은 교회전체장 전체복으로, 1등은 교회중앙장, 服은 有綠地方으로, 2등,3등은 교회지방장, 服은 유연지방으로, 4등,5등은 교회간부장, 服은 有綠地方으로 한다(服制日字는 예전참조)

제33조 전무출신으로서 5등이상에 참여하여 영묘전에 入廟할 때에는 入廟式을 거행한다.

제7절 친 애

제34조 전무출신의 集團生活은 정신일체와 육신일체의 본지를 잘 理解하여 每事에 상호간 親愛를 主로 한다.

제35조 동지간에 혹은 정신상 過誤가 생할 때에는 간격없는 愛情으로써 진실히 충고하여 동시에 그 過誤가 外部에 漏泄하지 않도록 注力한다.

제36조 충고를 받은 자로서는 감사한 마음으로써 受納하여 즉시 悔改하기를 서약하고 절대로 不平, 羞恥, 疑惡의心思를 두지 않기로 한다.

단, 과실이 없는 일이면 平和한 語調로써 그 實情을 辨明한다.

제37조 개인충고가 3차에 미치되 悔改하지 아니하면 2인내지 3인의 동지가 협력충고하며 협력충고가 3차에 미치되 또한 悔改하지 아니하면 그 事由를 以上 指導部에 壟告한다.

단, 긴급사건과 또는 필요에 의하여는 개인충고순을 다밟지 아니하고 바로 지도부에 연락 할 수 있다.

제38조 동지의 과오를 보고도 충고 또는 以上連絡을 아니한 자와 또는 그 과오를 衆人에게 宣傳 하는 자는 친애의 도에 違反한 자로 看做한다.(罰

則은 賞罰規程參照)

- 제39조 충고하는 동지에게 불평을 가지며 색원대질하고 충고하는 말을 무조건
무시하는 자는 친애의 도에 違反한 자로 看做한다.(罰則은 賞罰規程參
照)
- 제40조 동지간에 지식우열이 상대할 때에는 그 우한자가 열한자를 절대로 하
시하지 말고 힘 미치는데 노력하기로 한다.
- 제41조 어떠한 묘법이든지 혹은 단독적 견문이 있는 때에는 기회를 따라 모든
동지에게 전급하는데 노력하기로 한다.
- 제42조 동지간에 육체상 병고가 생할 때에는 가족의 誼에 依하여 힘에 미치는
대로 정성껏 원조 하기로 한다.
- 제43조 동지간에 애경재상등 事가 있을 때에는 힘에 미치는대로 서로 同情하
기로 한다.
- 제44조 본 친애의 도를 지도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전무출신 상애회를 둔다.
단, 相愛會에 대한 세항은 별로 정한다.